

## 序 文

警察史는 國家의 本質的 意味에 있어서 결코 側面史가 될 수 없고 堂堂한 國史의 一環이 되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混沌의 秩序를 模索하는 그 過程에서 國家形態가 우선 警察의 制度로서 表現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 警察의 制度는 物的, 精神的 狀況의 決定的反映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우기 우리나라의 경우 解放以後의 事例를 通해서 보더라도 첫 段階, 建國警察의 役割을 다했으며 6.25動亂을 前後한 時期에선 救國警察로서의 貢獻이 커지고 지금의 段階에 와서 護國警察로서의 任務를 定立하기에 이르렀다.

그 歷程을 더듬어 보는 것이 國情自體를 더듬는 일이 되는 것이며 警察의 功過가 곧 祖國의 生理와 病理에 直結되어 있음을 짐작할 때 警察史는 어떤 特定機關의 歷史에 끝나지 않고 民族史로서의 性格을 띠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國立警察創設 27周年만에 韓國警察史의 出刊을 본다는 것은 晚時之嘆이 있는 그만큼 이번의 記念刊行을 높이 致賀하고 歡迎하는 感懷가 깊으다.

우리는 이 歷史를 通해서 우리의 任務의 重大性을 再確認하고 歷史를 通한 教訓을 일깨움으로써 向上의 기틀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그리고 韓國警察史는 古代로부터 日帝의 暗黑時代를 거쳐 光復에 이르기까지를 망라하고 있으니 警察當務者 뿐만 아니라 一般學究에도 좋은 文獻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나는 이 一卷의 歷史에 담겨진 治安秩序確立의 過程에 나타난 民族의 哀歡을 anye하게 感動的으로 評價한다. 警察活動의 必然的 意味와 기여 具現해야 할 理想警察의 모습을 구상하고 無量한 感慨에 젖기도 한다.

同時에 上古에서 未來로 뻗은 脉脈한 歷史 가운데의 하나의 因子라고 생각하니 무어라고 形言하기 어려운 意慾에 사로잡히기도 한다.

警官 여러분은 이 冊을 通해서 스스로의 歷史的 存在를 認識하고 國民의 安寧과 더불어 榮光이 있고 國民의 苦難과 더불어 스스로의 自負가 있을 수 있다는 自覺에 이

르를 것으로 안다.

보처럼의 待望속에 發刊된 韓國警察史를 보람있게 하는 것도 警察官 自身들이며 앞으  
로의 警察史를 民族에 有利하게, 國家에 有益하게 創造해 나가는 役軍도 警察官 自身  
들이란 感動을 바탕으로 各位의 분발을 바라마지 않는다.

그리고 나라의 警察史를 빛낸 先覺者, 警察功勞者 그 任務를 為해 殉國한 先輩 警  
察官들에게 경건히 머리를 숙여 感謝를 올린다.

그분들의 功績없인 韓國警察史는 生命도 光輝도 없는 文書일 수 밖에 없는 때문  
이다.

끝으로 龙大한 資料를 收集整理하여 紀念碑的 意味를 가진 韓國警察史의 현찬을 成  
功적으로 完成한 現찬위원 諸位의 勞苦에 感謝와 尊敬의 뜻을 表한다.

1972年 10月 日

內務部長官

## 發 刊 辭

韓國警察史가 오랜 陣痛을 겪고 이제 그 모습을 世上에 내어 놓게되니 실로 感慨가 無量합니다.

무릇 人間과 制度가 있는 곳에 반드시 그 나름의 歷史가 있고 그것을 記錄으로 整理하여 一聯의 發展法則性을 찾아내고 그리고 또 하나의 理想像을 設計함은 至極히 適切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지난날 韓國警察은 긴 歷史를 가지면서도 明白한 原理나 合理性있는 制度가 갖추어 지지 못한 채 그 時代의 政治, 社會的 狀況에 副應하였으며, 名實相符한 近代警察의 本軌道에 進入하기까지에는相當한 逆境과 試練이 있었습니다.

또한 解放과 더불어 植民地의 體制에서 脫皮하고 새로 導入된 西歐制度를 消化하기까지는相當한 時日이 必要했습니다.

이제 韓國警察도 그 나름의 獨創性을 追求하고 正統法則과 原理를 定立해야 할 時期를 맞이했다고 하였으며 우선 學問的 研究를 試圖해 본 것이 本書刊行이라 하겠습니다.

아울든 本書의 發刊으로 韓國警察은 搖籃에서 깨어나 學究的인 姿勢로 自己診斷의 勇氣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未經驗의 分野를 헤치다보니 挫折과 徘徨도 많았습니다.

만들어 놓고 보니 未洽한 點이 한 둘이 아닙니다.

批判은 舊發을 促求하며 聲援은 더욱 勇氣를 주는 것이니 江湖諸賢의 아낌없는 叱正과 聲援있기를 바랍니다.

1972年 10月 日

韓國警察史編纂委員會 委員長

內務部次官

정상천

## 刊 行 辭

「變化에 대한 適時調整」이 말은 「유엔」讚歌의 한 句節입니다만 現代社會의 秩序를 擔當하고 있는 우리 警察의 治安 戰略概念으로서 아주 適切한 表現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確實히 오늘의 社會는 急激한 變動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變動에 대하여 適時適切한 調整이 缺如된다면 거기에는 바로 混亂과 無秩序가 있을 뿐입니다. 變動은 一時的이나마 既存秩序의 攪亂을 意味하며 調整은 그 解消와 正常回復을 意味합니다. 따라서 現代 治安은 加速的인 社會變動을 미리 豫測하고 이에 機先하는 對應策을 必要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治安戰略의 動態性 乃至 時間性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治安의 動態性 乃至 時間性은 過去와 現在로 부터 斷切되어 未來만을 想定하는 飛躍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過去속에서 根源을 찾고 現在속에 土着하면서 未來를 追求하는 持續的인 發展과 成長을 意味합니다. 歷史에 飛躍이 있을 수 없고, 變動에 突然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韓國警察史를 探究하고 이를 體系化하여 刊行한 理由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變遷되어 온 歷史속에서 韓國警察 固有의 思想과 原理를 艮하고 숨은 教訓을 通하여 徹底한 自我整頓을 하면서 보다 알찬 未來像을 定立하여야 하겠다는 時代의 使命感을 切實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政警一致의 모습을 띤 古代社會나, 律令中心으로 治安이 이루어진 三國時代나, 軍警一體의 樣相을 보였던 高麗時代나, 그리고 捕盜廳이라는 警察專門官廳이 設置된 李朝時代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社會는 禮儀 바르고 善良한 生活規範에 의하여 平穩하고 秩序整然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日帝侵略으로 우리 固有의 生活規範은 破壞되고 日帝警察은 國民의 保護者가 아니라 그 彈壓手段으로 活用됨으로써 韓國民의 가슴깊이 警察에 대한 미움과 不信을 심어 놓았으며, 不幸하게도 光復後 創設된 國立警察은 日帝가 扶植한 警察不信

이라는 그 歷史的 遺產을 引受하여야 하기도 했읍니다.

그뿐 아니라 初創期 한 때에는 誤導된 政權에 의하여 政治에 干與함으로써 또 하나의 不信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國立警察은 光復後의 社會的 混亂과 無秩序를 바로 잡아 建國의 基盤을 닦았고, 共產侵略의 戰亂속에서는 身命을 바쳐 護國의 使命을 다하였으며, 建國의 礎石으로서 社會安定의 旗手로서 아낌없는 獻身을 해 온 것도 否認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國立警察이 創設되어 成長하기 27년, 그동안 온갖 受難을 克服해 온 體驗을 바탕으로 그리고 榮辱이 交叉된 過去를 教訓삼아 變轉하는 社會의 需要에 副應하고 새로운 歷史的 使命을 完遂함으로써 名實共의 國民을 위한 民主警察像을 確固히 定立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强靱한 한 意志의 表現이 바로 本書의 刊行입니다. 그러나 編纂過程에서 豫想外로 隘路가 많았고, 만들어 놓고 보니 內容 또한 未洽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다만 숨은 史料를 찾아내고 逸失되어 가는 資料를 集大成하여 우리의 過去를 整理해 본다는 뜻으로 本書를 上梓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本書의 編纂에 온갖 手苦를 다 해 주신 執筆委員 諸位와 關係職員 여러분에게 裹心으로 感謝와 致賀를 드리고 아울러 出版에 積極 協調해 주신 光明印刷公社 社員 여러분께 고마움을 傳하는 바입니다.

1972年10月 日

治安局長

## 凡例

1. 本書의 收錄範圍는 古朝鮮에서 大韓民國政府 樹立 以前(1948. 8. 15)까지 다루었다.
2. 篇章設定은 篇·章·一·1·가·①의 順으로 하였다.
3. 年代는 當時代의 王號로 表示하고 可能한 西紀年代를 併記하였다.
4. 註는 對照의 便宜를 위해 該當面下端에 整理하였다.
5. 寫眞은 該當篇 冒頭에 一括 실었다.
6. 숫자는 固有用語를 除外하고는 아라비아 숫자로 統一했다.
7. 本文에 未備한 複雜한 年代의 比較 便宜를 위해 附錄末尾에 韓末 甲午年 以後의 「年代對照表」를 添付하였다.

題字：襄吉基

# 韓國警察史(第1卷) 總目次

序 論	15
-----	----

## 第一篇 古代의 治安制度와 律令

第一章 部族國家時代의 治安	19
----------------	----

一. 古朝鮮의 法俗	19
二. 漢郡縣時代의 法俗	21
三. 南·北部族國家時代의 法俗	23
1. 扶 餘	24
2. 高 句 麗	26
3. 沃沮 吏 東濱	27
4. 三 韓	28

第二章 三國時代의 刑律	29
--------------	----

一. 高句麗의 國家組織과 刑律	29
1. 刑	33
2. 罪	37
二. 百濟의 國家組織과 刑律	38
三. 新羅의 國家組織과 治安制度	41

第三章 統一新羅時代의 治安制度	48
------------------	----

一. 統一新羅의 國家組織의 改編과 治安制度	48
二. 統一新羅의 律令	57
1. 新羅律	57
2. 新羅令	65

## 第二篇 高麗時代의 治安制度

第一章 高麗의 建國과 統治構造	83
------------------	----

一. 高麗의 建國과 王權의 確立	83
二. 統治機構	84
1. 中央官制	84
2. 地方官制	84
3. 軍制	85
<b>第二章 前期 警察制度와 業務의 概要</b>	<b>86</b>
<b>第三章 前期 警察制度</b>	<b>89</b>
一. 中央警察機關	89
1. 循軍部	89
2. 內軍部	91
3. 金吾衛	92
4. 其他의 警察關係機關	94
二. 地方警察機關	95
1. 司兵	95
2. 縣尉	98
3. 巡官	101
4. 禁火員	102
<b>第四章 警察業務</b>	<b>105</b>
一. 服務指針과 刑政	105
1. 服務指針	105
2. 刑政	107
二. 特殊司法警察	110
1. 國家叛亂事件과 警察	110
2. 對外警備	112
3. 倫紀關係	114
4. 捕盜	117
5. 消防警察	119
三. 行政警察業務	121
1. 戶口	121
2. 經濟關係	122

3. 交通警察 .....	125
4. 保健・營業 .....	126
5. 風紀警察 .....	128
6. 諸禁令 .....	130
<b>第五章 統治機構의 變遷</b>	<b>132</b>
一. 中央官制 .....	132
二. 地方官制 .....	132
<b>第六章 後期의 警察機關</b>	<b>134</b>
一. 中央警察機關 .....	134
1. 諸官署의 變遷 .....	134
2. 夜別抄 .....	137
3. 巡軍萬戶府 .....	138
二. 地方警察機關 .....	142
1. 縣尉制의 廢止 .....	142
2. 地方別抄 .....	144
3. 司錄・法曹 .....	146
三. 特殊警察 .....	148
1. 都房 .....	148
2. 忽赤・其他 .....	151
<b>第七章 後期 警察業務</b>	<b>156</b>
一. 特殊司法警察 .....	156
1. 政變斗 警察 .....	156
2. 民亂斗 尉衙 .....	159
3. 外亂斗 夜別抄 .....	163
4. 官紀・民弊의 是正 .....	167
5. 搜查・審問・判決 .....	169
6. 消防關係 .....	170
二. 行政警察業務 .....	173
1. 戶口 .....	173
2. 經濟關係 .....	175

3. 交通警察 .....	178
4. 醫療關係 .....	179
5. 風紀警察 .....	180
6. 禁令關係 .....	182

### 第三篇 朝鮮王朝時代의 警察

#### 第一章 朝鮮王朝의 樹立과 統治機構 ..... 191

一. 統治機構의 變遷 .....	191
二. 中央官制의 概況 .....	192
1. 文官 .....	192
가. 國務根幹機關 .....	192
나. 紛察·諫諍機關 .....	195
다. 顧問機關 및 制撰修史機關 .....	196
라. 法司 및 其他 .....	197
2. 武官 .....	200
가. 一般軍事組織 .....	200
① 前期 .....	200
② 後期 .....	202
③ 末期 .....	206
나. 宮兵組織 .....	210
三. 地方官制의 概況 .....	212
1. 道制의 成立 .....	212
2. 地方制度의 一般 .....	213
3. 地方軍制의 一般 .....	217

#### 第二章 朝鮮王朝의 警察制度 ..... 224

一. 中央의 警察機關 .....	224
二. 地方의 警察機關 .....	227
三. 專門的 警察機關 .....	229
1. 巡軍萬戶府↔義禁府 .....	230
2. 左·右捕盜廳—漢城內外 .....	233

3. 兼任討捕使一地方 .....	239
〈付〉 法典 .....	242
① 捕盜 .....	242
② 賊盜 .....	244
③ 治盜史 .....	246
④ 禁制 .....	247
四. 巡邏總論 .....	256
1. 前期의 巡邏 .....	256
2. 後期의 巡邏 .....	260
가. 漢城의 巡邏 .....	260
나. 地方의 巡邏 .....	266
〈付〉 法典 .....	267
① 行巡 .....	267
② 摻奸 .....	269
五. 護察機關 .....	270
六. 夜禁制 .....	276

#### 第四篇 韓末의 警察

第一章 甲午更張의 官制 .....	293
一. 更張官制의 概要 .....	293
1. 甲午改革 .....	293
2. 乙未改革 .....	305
二. 甲午 文官警察制의 導入 .....	316
1. 內務大臣 .....	316
2. 首都警察의 變貌(警務廳과 警務支署) .....	318
3. 開港場 警務官의 配置 .....	323
4. 監獄署(付·地方監獄) .....	323
5. 新警察의 精神과 諸規則 .....	326
6. 官等·俸給·服制 .....	331
三. 乙未警察官制 .....	337
1. 內部의 地方局 .....	337

2. 警務廳의 變動	340
3. 警務署 處務規程	349
4. 23府制地方과 警察官配置	351
5. 警察關係 諸規則	363
6. 行政警察規則과 窃盜處罰法	372
<b>第二章 建陽·光武의 警察組織</b>	<b>386</b>
一. 建陽·光武主體官制의 背景	386
1. 反日感情의 成長	386
2. 高宗의 俄館播遷	389
3. 年號 및 國號改定과 稱帝	392
4. 民權運動의 挫折	393
二. 建陽官制의 警察組織	395
1. 內部大臣의 格上	395
2. 警務廳 關係	397
3. 13道制과 警察 配置	401
4. 開港·市場警務署(10箇)의 新設	411
5. 警察官吏의 精神과 諸規程	418
三. 「警部」獨立期의 警察組織	432
1. 警部의 成立과 그 組織 및 豫算	432
2. 漢城警務監督所의 規定	434
3. 警務分署의 新設	435
4. 咸鏡北道 邊界警務署의 新設	445
5. 警衛院의 設置	446
6. 諸規程	450
四. 大「警務廳」制의 警察組織	458
1. 半獨立의 警務廳	458
2. 地方一部에 舊討捕營體制 復活	464
3. 龍川港·義州市 警務署 開設	467
4. 規程(服制의 改定)	468
<b>第三章 末期의 警察組織</b>	<b>474</b>
一. 主權의 衰失過程	474

1. 韓國에 있어서의 露日의 角逐.....	474
2. 日帝의 勝戰과 韓國 侵略.....	478
3. 韓國의 日帝保護國化.....	480
4. 國民의 抵抗運動.....	482
5. 海牙密使派遣과 高宗皇帝 讓位 .....	485
6. 主權의 衰失.....	487
<b>二. 乙巳警察組織.....</b>	<b>492</b>
1. 內部警務局의 獨立.....	492
2. 首都警察로 還元한 警務廳과 警務署.....	493
3. 地方의 警察.....	507
4. 皇宮警衛局 .....	509
5. 諸規程 .....	509
<b>三. 丙午警察組織.....</b>	<b>510</b>
1. 內部警務局의 衛生事務 引受와 分課.....	510
2. 警務廳의 簡素化와 警務學校 .....	512
3. 地方의 警察官署 新設(道警務署·分署·分派所制) .....	521
가. 中南部 6道에 警務署 및 分署 新設.....	524
나. 全國的 配置와 分派所制(每府郡一個原則) .....	526
① 全國的配置 .....	526
② 第1次改編 .....	536
다. 分權的 改編(第2次改編)——分署의 增加 .....	538
<b>四. 隆熙警察組織.....</b>	<b>550</b>
1. 內部警務局의 擴張(三課制와 衛生事務 移讓) .....	550
2. 警務廳을 警視廳으로 改稱 .....	552
3. 地方의 警察組織 完成(道警察部設置와 警察署의 增設) .....	556
가. 道警務署의 廢棄와 複數警察署制.....	556
① 道警務署制의 廉棄.....	566
② 第3次 警察官署 改編.....	569
③ 第4次 警察官署 改編.....	570
나. 道警察部 設置와 分署制 止揚 .....	574
① 道警察部의 設置.....	574
② 第5次 改編 .....	576

다. 그 후의 分權的 改編 .....	587
① 第6次 改編 .....	587
② 第7次 改編 .....	600
五. 警察權의 衰失 .....	613

## 第五篇 大韓民國 臨時政府의 警察

第一章 3·1大運動의 臨時政府 樹立 .....	621
一. 3·1大運動의 意義 .....	621
二. 3·1大運動의 概要 .....	622
三. 大韓民國臨政의 樹立과 憲政 .....	623
第二章 初期의 警察組織 .....	657
一. 內務總長 .....	657
二. 警務局一分局 .....	657
1. 警務局 .....	657
2. 分局 .....	659
3. 人事 .....	660
4. 生活補助 .....	660
5. 服制 .....	661
三. 聯通制(地方制)의 警察 配置 .....	664
第三章 末期의 警察組織 .....	670
一. 內務部長 .....	670
二. 警務科 및 警衛隊 .....	670

## 〈附篇〉 日帝下의 警察

第一章 韓末의 日帝警察의 設置 .....	693
一. 在韓日帝警察의 沿革 .....	693
1. 領事警察↔統監府警察 .....	693
2. 韓國政府 招聘顧問警察 .....	693

3. 在韓日本 兩警察의 廢止	699
二. 日帝憲兵의 治安警察 強行의 經緯	700
<b>第二章 憲兵警察時代(Ⅰ)</b>	<b>711</b>
一. 統監府의 構造	711
二. 武斷警察制度의 創始	717
1. 警務總監部	717
2. 警務部(道)	717
3. 警察署와 憲兵分隊	717
三. 憲兵警察의 配置	724
<b>第三章 憲兵警察時代(Ⅱ)</b>	<b>755</b>
一. 朝鮮總督府의 構造	755
二. 憲兵警察의 配置 變更	765
三. 警察關係 諸法規	843
1. 犯罪 即決例	844
2. 警察犯 處罰規則	846
3. 刑事 關係令	850
4. 朝鮮 刑事令	855
5. 司法警察官 執務規程	860
<b>第四章 普通警察時代</b>	<b>866</b>
一. “大韓獨立萬歲”와 憲兵警察制의 敗退	866
二. 普通警察制의 採用	867
1. 總督府警務局	867
2. 警察官講習所	868
3. 道知事 第3部	868
4. 警察의 職務를 行하는 憲兵官署의 引受	869
三. 末期의 戰時警察制	912

## 第六篇 美軍政下의 警察

<b>第一章 概 說</b>	<b>923</b>
----------------	------------

一. 2次大戰 終戰과 國內治安	923
<b>第二章 軍政下의 警察制度</b>	<b>926</b>
一. 軍政警察權의 確立	926
1. 警察官募集과 逐出 및 副作用	928
2. 治安確保를 為한 緊急措置	929
二. 國立警察의 創設	930
1. 初期의 組織과 運用(警務局時節)	931
2. 第1次改編	938
가. 警務部(中央)改編	938
나. 管區警察廳(地方)	944
<b>第三章 國立警察의 發展</b>	<b>953</b>
一. 國立警察의 特徵	953
二. 制度整備	955
三. 教育機關	958
四. 特殊警察	959
1. 騎馬警察隊	959
2. 女子警察	959
3. 鐵道警察	963
五. 警察業務의 一元化	964
1. 衛生業務의 移管	965
2. 日帝彈壓法의 廢止와 司法權의 確立	965
3. 經濟警察의 廢止 및 移管	966
4. 檢閱警察과 出版警察의 移管	966
5. 消防部 및 消防委員會의 創立과 事務移管	967
6. 其他 許可權의 移管 및 廢止	967
7. 刑事訴訟法의 改定	968
8. 中央警察委員會의 設置	968
9. 指紋業務의 吸收	969
10. 公報業務의 開始	970
11. 監察組織의 強化	970

## <附 錄>

一. 各種統計 諸表.....	979
1. 警察官署現況表(1925—1935) .....	979
2. 各道別警察署現況表(1925年度) .....	979
3. 各道別警察官署現況表(1928年度) .....	979
4. 各道別警察官署現況表(1933年度) .....	980
5. 美軍政下警察官署現況表(1945—1948) .....	980
6. 年度別警察官定員表(1909·1915·1921·1922·1925—28·1931—35·1940·1943) .....	980
7. 警察官 1人當面積・戶數・人口表(1932年度) .....	981
8. 警察官 1人當面積・戶數・人口表(1940年度) .....	981
9. 警察官年齡別表(1921·1922·1925—27·1931—34·1940) .....	982
10. 警察官學歷現況表(1921—35·1940) .....	983
11. 警察官懲戒現況表(1915·1925—28·1931—35) .....	983
12. 警察諸裝備現況表(1929·1931—35) .....	983
13. 年度別警察豫算現況表(1918—1941) .....	984
14. 年度別文書收發件數現況表(1920—35·1940) .....	985
15. 年度別警察豫算明細表(1923·1926—29·1932—36) .....	986
16. 年度別自動車事故現況表(1920—22·1925—40) .....	986
17. 犯罪發生 及 檢舉件數比較表(1921—40) .....	987
18. 警察電話架設現況表(1925—35) .....	988
19. 即決犯罪現況表(1917—40) .....	988
二. 美軍政下 警察關係 日誌(1945.8.15~1948.8.15) .....	989
三. 美軍政下 警察關係 重要法令抄.....	996
四. 美軍政下 警察關係 重要事件 .....	1009
<1945年度>	
1. 解放.....	1009
2. 美軍 進駐 .....	1009
3. 機關銃 強盜團事件 .....	1009
4. 信託統治外 反託 .....	1010

5. 宋鎮禹 暗殺事件 ..... 1010

<1946年度>

1. 開城 拳銃強盜事件 ..... 1011
2. 阿片密賣事件 ..... 1011
3. 南勞黨의 活動 ..... 1011
4. 朴憲永 等 逮捕令 ..... 1012
5. 要人暗殺團 檢舉 ..... 1012
6. 李承晚博士 狙擊事件 ..... 1012
7. 趙炳玉警務部長 殺害未遂事件 ..... 1013
8. 首都警務總監 被襲事件 ..... 1013
9. 學兵同盟 銃擊事件 ..... 1013
10. 朝鮮精版社 偽幣事件 ..... 1014
11. 南朝鮮 6月總罷業事件 ..... 1016
12. 10·1嶺南 暴動事件 ..... 1018
13. 廣州警察署 被襲事件 ..... 1022
14. 開城警察署 臨漢支署 被襲事件 ..... 1023
15. 開城警察署 上道支署 被襲事件 ..... 1023
16. 開城警察署 豊德支署 被襲事件 ..... 1023
17. 延安警察署 吳 同署 各支署 被襲事件 ..... 1024
18. 延白警察署 深桂支署 被襲事件 ..... 1024

<1947年度>

1. 安在鴻 民政長官 就任 ..... 1025
2. 左翼檢舉旋風 ..... 1025
3. 呂運亨家 爆破事件 ..... 1025
4. 列車內 美軍強姦事件 ..... 1026
5. 勤勞人民黨首 呂運亨 被殺事件 ..... 1026
6. 張德秀 暗殺事件 ..... 1026
7. 首都警察廳 查察警察官 被襲事件 ..... 1026
8. 釜山 警察署長 被殺事件 ..... 1027
9. 趙 警務部長 吳 張 首都警察總監 等 暗殺團檢舉事件 ..... 1027
10. 서울中央放送局 赤化企圖事件 ..... 1028
11. 安城警察署 二竹支署 被襲事件 ..... 1028

12. 傀儡軍 抱川地區 來襲事件	1029
13. 8·15 暴動陰謀事件	1029
14. 國大案 反對 盟休事件	1031
15. 3·22(24時間) 總罷業事件	1032
16. 永登浦 左右翼勞組 衝突事件	1033
17. 2·27事件 (美・蘇共委慶祝 및 臨政樹立促進人民大會事件)	1033
18. 南大門 3·1節行事 衝突事件	1034
 <b>&lt;1948年度&gt;</b>	
1. 制憲國會 (5·10選舉)	1036
2. 大韓民國 政府樹立	1036
3. 南北協商	1037
4. 首都廳長 被襲事件	1037
5. 大統領官邸 爆發物 裝置事件	1038
6. 大韓民國政府樹立 反對 陰謀事件	1038
7. 4·3濟州島 暴動事件	1039
8. 5·10總選舉 妨害事件	1041
9. 麗・順 叛亂事件	1043
10. 順天檢察支廳 朴昌吉檢查 銃殺事件	1046
11. 五台山 共匪掃蕩	1047
12. 人民革命軍事件	1048
13. 大邱 第6聯隊 叛亂事件	1048
14. 北朝鮮의 韓鮮銀行券 對南密送事件	1049
15. 永登浦 電話中繼所 被襲事件	1050
16. 南勞黨 警務部 細胞事件	1050
17. 南勞黨 農務部 細胞事件	1051
18. 餅店驛 機關車 奪取事件	1051
19. 仁川 郵遞局 等 放火事件	1051
20. 坡州警察署 州內支署 襲擊陰謀事件	1052
21. 楊平警察署 楊東支署 襲擊陰謀事件	1052
22. 安城郡 陽城面事務所 放火事件	1052
五. 韓國 警察機構 變遷表(韓末一美軍政)	1053
1. 甲午 警察機構表(1894)	1053

2. 乙未 警察機構表(1895) .....	1053
3. 建陽 警察機構表(1896) .....	1054
4. 二局制「警部」警察機構表(1900) .....	1054
5. 三局制「警部」警察機構表(1900~02) .....	1055
6. 大「警務廳」制 警察機構表(1905) .....	1056
7. 乙巳 警察機構表(1905) .....	1057
8. 丙午 警察機構表(1906) .....	1058
9. 隆熙 警察機構表(1907) .....	1059
10. 大韓民國 臨時政府의 警察機構表(1919) .....	1059
11. 大韓民國 臨時政府의 警察機構表(1944) .....	1060
12. 統監府 警察機構表(1910) .....	1060
13. 總督府 警察機構表(1910) .....	1061
14. 總督府 警察機構表(1919) .....	1062
15. 總督府 警察機構表(1930) .....	1062
16. 總督府 警察機構表(1937) .....	1063
17. 總督府 警察機構表(1945) .....	1063
18. 美軍政廳下 警察機構表(1945) .....	1064
19. 美軍政廳下 警察機構表(1946) (2~1).....	1064
20. 美軍政廳 警務部機構表(2~2) .....	1065
21. 美軍政廳下 警察機構表(2~3) .....	1066

## 序　　論

韓國警察史는 韓國史의 範疇에 속하는 特殊史의 一分野이며, 우리 民族의 成長過程 속에서 特히 警察制度의 發展過程을 學問的으로 追求함에 그 目的을 두고 있다고 하겠다.

바야흐로 우리의 民主警察은 그 搖濫期에서 벗어나 制度的 完備와 能率的 組織機構, 그리고 나아가 効率的 機動性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끊임없이 變遷하는 政治·社會·經濟 등의 世界的 趨勢에 副應하기 위한 方途로서 橫的으로 歐美各國의 警察制度를 比較研究하는 것도 繁要한 일이라 하겠으나, 警察制度를 時間的 흐름속에서 把握함으로써, 日淺한 우리 民主警察의 進路에 대한 하나의 示唆를 얻고 發展的인 改善을 이룩하는 데 一助가 되게 하는 것도 焦眉의 課題가 될 것이다.

警察史의 歷史的研究는 그 作用의 變動을 對象으로 한다. 洋의 東西를 莫論하고 이 세까지의 많은 國家의 警察制度의 變遷을 概觀하여 보면 대개의 경우 그것은 國民을 支配管理하기 為한 手段, 즉 命令者로서 使用되었으며 또 그것을 보다 合理的으로 實시하기 為한 變動轉化의 繼起이었다.

그것은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例外일 수는 없었다. 다만 西歐와 比較 할 때에 多少의 特殊한 점이 있는 바, 西歐에 있어서의 저 有名한 大憲章(Magna Charta)이 國王의 專斷的인 逮捕·押留 및 拘禁에 關한 大權의 濫用의 制限을 規定하고 있는 것은 國民의 框架이 되어 있는 警察制度에 대한 民衆의 鬪爭의 成果였다. 또 로마의 12表法도 執政貴族層의 警察權濫用에 대한 平民의 抗爭에 緣由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反하여 우리 韓民族은 歷史的으로 家父長的인 權威主義下에 國民은 政治의 客體가 되어 왔으므로, 西歐의 경우와 같은 大憲章이나 12表法과 같은 뚜렷한 民權伸張의 傳統은 볼 수 없었다.

그리하여 우리 歷史上 治者階級의 民衆에 대한 特徵의 하나는 教化主義 内지 德化主義를 標榜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傾向은 恒久的인 國是, 歷代 法典의 精神이 愛民·救恤·德治·寬容에 나타나 있다.

國史上 治者階級의 精神界를支配하여 온 儒教의 「道之以政 齊之以刑 民免而無耻 道之以德 齊之以禮 有耻且格 謂改過也」(論語 為政第二)라고 한 말로도 능히 그 一端

을 짐작할 수 있다 하겠다.

우리 民族史의 舞臺는 아시아大陸의 東쪽 끝에 붙어 있는 조그마한 半島인데 東南으로 日本民族과 一衣帶水의 관계에 있으며, 北으로는 漢民族·滿洲族·蒙古族 등 여러 民族과 서로 이웃하고 있다. 前者は 古代부터 끊임없이 우리나라 海岸과 領土를 侵犯하여 掠奪을 일삼던 倭寇의 後裔이고 後者は 國史上 數없는 侵略을 통해 國難을 당하게 한 民族들이었다.

그러므로 民族史는 半島의 多隣性으로 말미암아 여러 外勢의 壓力에 시달리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國難을 당할 때마다 外敵을 용감히 물리친 것은 軍 및 警察이었다고 할 수 있다. 軍과 警察이 分化되기 以前의 古代에 있어서 警察은 國家保衛를 그 使命으로 하였다고 하여도 좋을 것이다.

예컨대 高麗時代의 巡軍(巡檢制)·三別抄 등은 戰鬪警察의 任務를 띤 것이었다. 朝鮮時代에는 文宗元年(1451)으로부터 捕盜別巡의 法을 두어 別軍을 發하여 不意에 京中과 城外를 搜捕하되 中宗年間에 이르기까지 臨機應變으로 捕盜將을 權置하였을 뿐이며 이것을 恒設하지 않은 것은 捕盜將兵의 民間に 대한 行悖와 討索을 두려워 하였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이 史上에 著聞되는 警察의 任務는 國家の 保衛와 國民의 安寧秩序를 維持하는 데 그 設置 및 運用의 目적이 있었다고 하겠다.

따라서 韓國警察制度를 研究하는 目的是 現實의 警察의 制度 및 組織과 그 實際上의 運用을 위하여 그 變遷過程을 分明히 하는 데 있다.

끝으로 韓國警察史의 方法은 古典文獻에 採錄되어 있는 이 方面에 관한 史料를 檢討分析함으로써 當該時代의 警察意識의 基盤을 밝히고, 現實의 警察組織 및 作用에 接近시키는 데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古典文獻에 나타난 意味內容을 科學的으로 把握하려는 研究態度가 무엇보다 紧要하다고 할 것이다.